

조리원 수시 채용 모집 공고

□ 채용부문

채용부문	채용인원	응시자격
조리원	2명	◆ 해당사항 없음
응시자격	1.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 2. 우대사항 :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 관련 법률에 근거함.	

□ 제출서류

- 의료원 입사지원서(별지1) 및 자기소개서(별지2) 1부.
- 개인정보동의서(별지3) 1부.
-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별지4) 1부.

□ 합격자 결정

- 서류 전형의 적격 여부 심사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

□ 접수기간 : 2026. 3 17.(화) ~ 충원시까지

□ 접수처 : (58701)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 목포시의료원 총무과 총무과 ☎ (061)260-6351

※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되며, 반환되지 않는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.(첨부 채용응시서류 반환 청구서(별지5))



자 기 소 개 서

1. [지원동기 관련 질문]

우리 의료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.

2. [경험 및 경력활동 질문]

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사회활동, 봉사, 직무 경험 등 본인이 쌓은 경험과 경력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십시오

3. [문제해결능력 질문]

학업과제 수행이나 업무 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습니까?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기술하십시오

4. [의사소통능력 질문]

과제 및 업무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 한 경우 효과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기술하십시오

5.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하십시오

※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
※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.
(대리 작성,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)

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 성 자 : (서명)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있음 없음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-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 해당 해당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 해당 해당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
지원자

(서명)

[별지 5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응시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목포시의료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